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무역항	예선보유기준
1. 인천항(경인항을 포함한다) 2. 평택·당진항 3. 대산항(태안항을 포함한다) 4. 군산항(장항항을 포함한다) 5. 여수항(광양항을 포함한다) 6. 마산항(삼천포항, 통영항, 진해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다) 7. 부산항 8. 울산항 9. 포항항 10. 보령항	예항력은 합계 기준 2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구역을 경인항에 한정하는 경우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으로 한다.
1. 목포항(완도항을 포함한다) 2. 동해·묵호항 3. 제주항(서귀포항을 포함한다) 4. 속초항(삼척항, 옥계항 및 호산항을 포함한다)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